

법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

강남 00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김세로이군. 심야 자습 후 친구들과 인근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아버지 차량인 벤O E클래스 300 차량을 몰고, 친구들과 같이 다른 장소로 이동 중에 인근 길가에 세워진 갑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약 5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손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동승한 친구 을과 병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사안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자 갑의 손해배상 청구
2. 동승자 을 병의 손해배상 청구
3. 음주 운전과 관련한 형사 처벌
4. 면허 정지 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5.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 차량 소유자 갑은 가해자 김세로이 군의 음주운전 즉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법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볼까요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군은 자신의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갑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김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수리비 500만원 및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만약 김군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였다면, 김군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가 성립할수도 있죠

※ 보호 감독자 책임 (책임무능력자)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일반불법행위 성립)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직접 가해자는 불법행위 성립x)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자는 배상책임 있음. but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할 경우 책임 면제

예)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갑이 한눈을 판 사이 아들 을(6세)이 장난을 하다가 병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2. 동승자 을과 병도 김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김군의 음주운전 및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내용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례로 택시에 탄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택시기사에게 손님은 민법 제 390조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할 수 있겠죠. 만약 상해가 심각하다면 형법상의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법에서 배우는 채불과 불법행위를 비교해 볼 수 있죠

cf.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계약관계에서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중에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	특별한 관계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 책임 < 불법행위 책임	
사례)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은 운행을 위한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에 책임 등 두 개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 可	

3. 김군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있어서 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죄를 범하였습니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김군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인 경찰은 김군을 도교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입건하여 확인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겠죠. 검찰은 전과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할 것입니다. 기소후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겠죠. 만약 김군이 동종 전과가 있어 검찰에서 구소기소를 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의 문제, 구속적부심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겠죠.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신문 구속전 피의자	구속적부심 구속 후 피의자
대상자		
내용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 판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합한지 판사에게 심사 요청
청구절차	없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시 자동 심사	피의자측에서 청구 검사의 기소전까지 법원에 청구
인용된 경우	피의자 구속수사	피의자 불구속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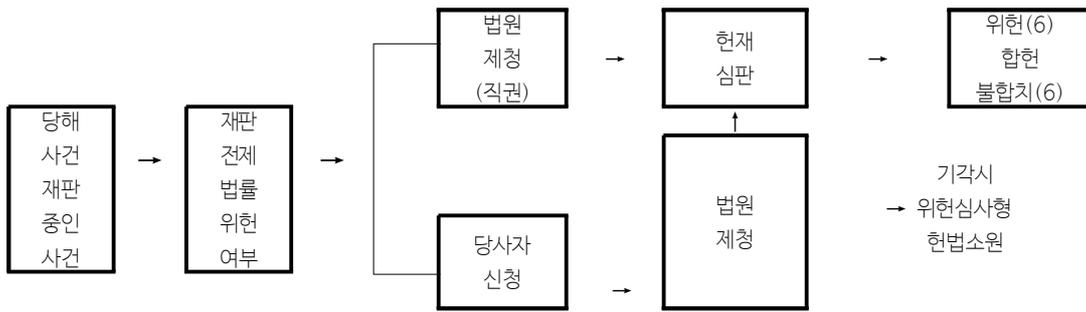
4. 도로교통법 제 93조에서는 음주운전시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도 있죠.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김군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우는 '근로자의 권리' 파트 부당해고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피고의 문제는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을 내린 처분청의 장(長)**이 바로 피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향고소송)	- 근로자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재심 →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사용자/노동조합x) (중앙노동위원회) ↳ (재심결정 취소의 소) ※ 원고 : 근로자 vs.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재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 : 사용자)

이는 바로 행정소송의 문제인 것이죠

5. 3.번에서 검사의 기소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김군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93조의 규정이 헌법 10조에 근거한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제청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죠. 만약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면 김군은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정법에 나오는 개략적인 내용 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종합될 수 있는 사안을 구성하여 가장 간단하게 내용을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하나의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되죠. 가장 크게 본다면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적 문제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의 문제와 국가와 개인사이의 법률적 문제인 공법적 사안에서 형법, 행정법, 헌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하나의 사안에도 여러 가지 사법과 공법의 문제가 얽혀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등등 관할도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와 배포 자유로우나, 출처는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End of document.